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www.kita.net

KITA

통상이슈브리프

2025.05.30.

美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정아 수석연구원 (02-6000-5954, ja.lee@kita.or.kr)
한주희 연구원 (02-6000-5071, jh.han@kita.or.kr)

Ⅰ 주요 판결 내용

□ **美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관세 조치가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결**(5/28)

○ 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등의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그 집행 또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25%)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므로 이번 판결과 무관

<판결 대상 관세 조치>

구분	내용	부과 근거	시행 시점
EO 14193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불법 이민·마약	시행 중
EO 14194	멕시코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시행 중
EO 14195	중국산 상품에 20% 관세 부과		시행 중
EO 14257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 부과	무역적자	시행 중
	57개국에 대해 최대 50%까지 차등 부과		7/9(유예 중)

(참고) 美 국제무역법원

美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 무역과 관세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사법 제도의 1심 법원(뉴욕 소재)
- 동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연방항소법원(워싱턴 소재)에서 다뤄짐

□ CIT의 IEEPA 관세조치 위법 판결 사유는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IEEPA상 권한 초과, ▲무역 적자 대응 수단으로 원용 불가, ▲비상사태 해소 위한 조치에 국한 등

❶ 행정부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로 의회의 입법권 침해

- 연방헌법은 관세 부과권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포괄적인 관세 부과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합중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다.

…

3.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❷ IEEPA는 대통령에 무제한적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한 '외국의 재산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비상사태 대응에 한정되고, 무제한적으로 관세부과를 허용하지 않음

(a) (1) … 대통령은 그가 규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시, 허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

(B) 외국 또는 그 국민이 이익을 가지는 재산과 관련하여, 조사 중 차단, 규제, 지시 및 강제, 무효화, 방지 또는 금지, 취득, 보유, 보류, 사용, 이전, 인출, 운송, 수입 또는 수출, 거래,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의 행사, 또는 거래를 조사, 차단, 규제, 지시 및 강제, 무효화, 방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제1702조

❸ IEEPA가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원용될 수 없음

-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는 동 법이 아니라 1974년 통상법 제122조*를 통해 가능

*국제수지 적자 등 무역 불균형 대응을 위해 대통령은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음

제122조(무역수지에 관한 권한)

(a)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및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A)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된 관세 외에, 15%를 초과하지 않는 임시 수입 부과금(관세 형태)을 선포하거나,

(B) 임시 수입 할당량, 또는 양자의 조합을 선포해야 한다.

–1974년 통상법 제122조

❹ IEEPA 관세는 비상사태 원인인 불법이민·마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으로 국한될 필요

- IEEPA에 따른 권한 행사는 해당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하는 목적에 한정
- 적용 중인 관세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기보다 상대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보여 법률상 요건 미충족

> (a) …대통령에게 부여된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이 해당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에 한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기인하는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대응하기 위해(deal with) 행사될 수 있다.
>
> (b)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본 장의 목적상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
>
> **– 미국연방법전 제50편, 제1701조**

(참고) IEEPA 관세 관련 소송 현황

○ 이번 판결은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美 기업 5개사 대리)와 오리건주 등 12개 주정부*가 제기한 2개의 소송을 병합한 사건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버몬트주

○ 현재 IEEPA 관세조치 관련 최소 7건의[1]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번 사건 외에 신시민자유연맹(NCLA), 캘리포니아주, 몬태나주 블랙피트 부족 구성원 등의 사건도 계류 중

- 美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몬태나주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된 소송들을 모두 CIT로 이전할 것을 요청

○ 한편,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IEEPA 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으며, 대중국 마약 관세·상호관세 부과 금지 임시명령을 발부(5/29)[2]

- 정부의 항소를 고려해 해당 명령의 효력은 14일간 정지되며, 법무부는 판결 당일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 해당 관세 징수 명령은 원고인 교육완구 제조사 2개 기업에만 한정되는 내용으로, CIT 판결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존재

1) Knauth, Dietrich(2025.5.22.), "A dozen US states decry Trump's "blank check" tariffs in lawsuit", Reuters.
2) Brett Fortnam(2025.5.29.), "Second court finds Trump's IEEPA tariffs unlawful", Inside U.S. Trade.

Ⅱ 전망 및 평가

□ 美 법무부는 본건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즉각 항소하였으며, CAFC 판결에 따라 연방대법원 상고도 진행될 수 있으나 심리여부는 대법원의 재량으로 결정[3)]

○ 법무부는 CAFC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하였고, CAFC는 이에 대해 임시 효력 정지(administrative stay)를 명령(5/29)[4)]

- CIT에서 무효화되었던 IEEPA 관세는 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 본안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 존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

*향후 IEEPA 관세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된 금액이 환급될 수 있으나 기산점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권한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 원고는 행정부의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6/5까지, 피고(행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서를 6/9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의 효력정지 판단이 확정될 전망

○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청구서(writ of certiorari)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해당 청구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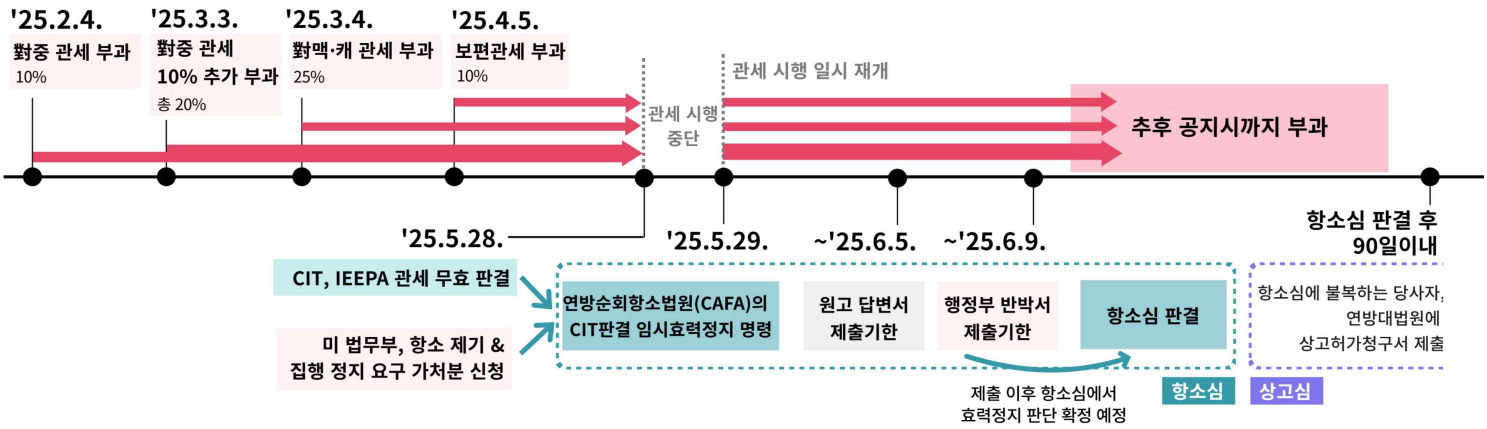

□ 미국법상 소송에 관계없이 한미 기술협의를 포함한 상호관세 대상국과의 무역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법원에 의해 IEEPA 관세조치가 무력화될 경우, 트럼프 정부가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적자에 대한 통상법 122조 관세(최대 15%), 불공정 무역행위 및 상업적 이익 침해에 대한 관세법 338조 및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조치 도입도 상정 가능

3) 28 U.S. Code § 1254: Courts of appeals; certiorari; certified questions
4) 美연방순회법원(CAFC)판결문(Nos.25-1812,25-1813)
5) 28 U.S. Code § 2101 – Supreme Court; time for appeal or certiorari; docketing; stay

□ **(현지반응) CIT 판결에 대해 현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 **(정치권 및 법조계)** 대체로 이번 판결이 미국 가정과 기업, 법치주의를 수호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6)]

○ **(행정부)** 백악관은 국가비상사태 대응은 비선출직인 판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행정 권한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백악관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판결 직후 SNS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The judicial coup is out of control)'라고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 케빈 해싯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협상이 계속될 것이며, 패소할 경우에도 관세 부과를 위한 대체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7)]

○ 판결에 대해 각국 멕시코·호주 등 고위 당국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며,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8)]

6) Palmer, Doug Kyle Cheney and Josh Gerstein(2025.5.28.), "Federal court strikes down Trump's tariffs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Politico.
7) Palmer, Doug and Ewing, Giselle Ruhiyyih(2025.5.29.), "White House insists court ruling won't derail Trump's tariff agenda", Politico.
8) Spiegelman, Margaret(2025.5.29.), "U.S. trading partners react tentatively to CIT's ruling on Trump's tariffs", Inside U.S. Trade.